

민원 인쇄



인쇄자: 김명호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608-0913018
신청일	2026-08-22 23:49:18
신청인	김명호
신청인 구분	개인
주소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민원답변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유선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mkim1795@daum.net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은평경찰서 수사 6팀 김순옥 경감과 수사과 김선희에게
내용	1. 수사과 김선희 ! 은평경찰서 2026-001051 사건 관련하여 제출한 "공범 추가 고소장"(2AA-2608-0779024) 수사 6팀 김순옥 경감에게 빨리 넘기지 않고 시간 끌고 자빠지고 있는 거냐? 2. 아래는 다른 기관에 제출된 고소장인데, 참고 자료로 김순옥에게 넘겨라 ===== 서로 간의 범죄 은폐 "부당거래"로 국민 등 처먹는 은평경찰서와 은평구청 고소인: 김명호

피고소 기관: 은평경찰서, 은평구청

제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형법] 제30조(공동 정범), 제32조(종범)

국민을 위하여 서로 감시 견제하기는커녕 서로 간의 범죄 목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위 2기관은 은평구 뉴타운 10단지-1의 관리비 도둑질 사건을(서부지검 2026형제4934호, 은평경찰서 2026-001051, 이하 "관리비 도둑질") 은폐/축소하는데 작당하였기에, 알선수재 관리비 도둑질의 공동정범 및 종범으로 고소한다.

공동정범 입증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정범 입증에 대한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요지

(1)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2) 그 의사결합에 대한 입증은, 정황 사실들을 치밀한 관찰,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인 판단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

따라서, 위 기관의 의사결합, 즉 공동정범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정황 사실들의 연관성을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

2. 정황 사실들과 그 연관성

(1) 서로 간의 범죄적 약점 쥐고 있는 집행 기관

가. 은평경찰서는 [주차장법] 및 [불법건축물] 위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임에도 (3.24일 고소, 서부지검 2026형제7286호)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 단속기관인 은평구청은 202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은폐해 주고 있고

나. 은평구청은 관리비 도둑질에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산옥 구청 주무관은 관리비 도둑질의 공범으로(3.17일 고소) 은평경찰서에 고소된 상태.

(2) 관리비 도둑질의, "수의계약서 공개 관련 법령 위반" 조사(이하, "핵심조사")를 일치단결하여 결사적으로 거부하는 2기관

가. 2년 6개월여, 고소인이 수의계약서 관련 게시물을 올려놓은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eunpyeong10>)의 게시물 확인은 핵심조사로서, 관리비 도둑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100% 유죄 확정하는 것이고 그건 곧 은평구청을 범죄기관으로 낙인 찍는 것이니 은평구청이 은평경찰서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가만히 있겠는가?

나. 그러니 은평경찰서는 핵심조사를 위법하게 5개월여 미루며 은평구청의 감사를 기다려온 것이고

"위법 개판 감사" 발표 인용하여 "위법 개판 수사" 결과를 내겠다는 뻔한 수작인 거다.

	다. 물론 당연히 4일간의 은평구청 "위법 개판 감사"(8.18~21일)에서도 핵심조사를 완강히 거부하며 일절 하지 않았다(*카페에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 고소인이 18일(오후 3-4시) 감사현장(입주자 대표회의실)에 찾아가 강력하게 핵심조사를 해야 한다며 카페 주소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3. 결론: 2기관이 합심하여 핵심조사 위법하게 거부함으로써, "서로 간의 범죄 은폐 알선"을 주고 받은 행위로 알선수재 공동정범인 것. 그리고 관리비 도둑질의 종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세금으로 월급 받아 처먹는 종년놈들의 기관들이 서로 간의 범죄 비호 "부당거래"로 국민들 등 처먹고 있는 거지. * 기록으로 남길 뿐, 고소인은 기대하지 않는다, 이 사건이 법대로 해결될 거라고는. 왜냐하면, 대검찰청 "공무원 부패 장려 부장" 주민철을 비롯한 검사년놈들이 썩어 빠지고 죄다 돌대가리들이거든. 대다수가 아파트에 사는 그 검사년놈들도 관리비 사기 당하는 주제에 "묻지마 불기소 처분"하며 "지 발등 내려 찍는" 돌대가리들이란 말이다. 자세한 건 ⇒ https://seokgung.com/eunpyung10/corrupt9x.htm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경찰청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은평경찰서 수사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8-0883097
접수일	2026-08-22 23:49:18
담당자(연락처)	김선희 (02-350-1430)
처리에정일	2026-09-0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통지일	2026-08-27 17:49:49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은평경찰서 수사과 국민신문고 담당자 수사지원팀장 경감 김선희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608-09130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민원 내용은 '업무상배임죄 공범 추가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민원 내용에 대해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배임) 등 위반에 혐의를 두고 접수(접수번호 : 2026-6662, 접수일 : 26.08.27.)한 후, 담당부서인 수사과 수사6팀에 배당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은평경찰서 수사과 국민신문고 담당자 수사지원팀장 경감 김선희 (02-350-143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붙임 1. 민원신청서.

첨부 파일**만족도 결과**

질문	답변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한마디 더	
김선희 22일 접수된 서류를 김순옥에게 27일 넘기겠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나? 5일씩 지연하고 자빠지고 나서도 아직 넘기지도 않고 미래에 하겠다는 거냐? 너도 공범으로 참여하고 싶어 안달하는 거냐? 니 죄목에 [형법] 제151조(범인은닉) 추가되는 거는 알고 있냐? 너 같은 돌대가리가 알 리가 없어 특별히 알려준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질문

답변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